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23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장종태 · 이수진 · 김병기
박지원 · 박수현 · 김남희
이주희 · 김 현 · 박용갑
안호영 · 최기상 · 장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 16조제1항제7호).

법률 제 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쪽방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p> <p>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 략)</p> <p>7. <u>쪽방상담소</u>: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8. (생 략)</p> <p>② (생 략)</p>	<p>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p> <p>①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쪽방종합지원센터</u>----- ----- ----- -----</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